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참 고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9. 30(월)	담당부서	통상분쟁대응과 산업피해조사과
담당과장	정하늘 과장(044-203-4880) 한상덕 과장(044-203-5860)	담 당 자	박근형 사무관(044-203-4884) 송병철 사무관(044-203-5864)

WTO 분쟁해결기구, 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최종판정 채택

- 우리나라가 승소한 상소기구 판정(9.10)을 공식화 -

□ '19.9.30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기구*는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('15.8.19)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('19.9.10)를 공식 채택하였음.

* **분쟁해결기구(Dispute Settlement Body)** : WTO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분쟁해결절차 전반을 주관하는 합의체로서 통상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. 패널의 설치, 패널·상소기구·중재 보고서의 채택, 판정과 권고의 이행·감시,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 권한 보유.

□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,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.

○ 특히,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음.

○ 아울러,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,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설명하였음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임.

○ 아울러,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.

○ 금번에 협정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임.

< 최종판정 주요 내용 >

□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

□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*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,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 (가격효과의 존부 및 피해원인 여부를 문제삼은 일측 주장 불인정)

* ①일본산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분석방법 중 2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, ②비밀정보의 취급방법, ③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방법

□ 일본은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아, 관세율 조정 여부는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제외 (덤핑방지 관세율의 조정 의무 발생 불가능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박근형 사무관(☎ 044-203-4884) 또는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사무관(☎ 044-203-5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분쟁 경과

○ ‘15.1.20. 무역위, 일본산 밸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

* ‘14.2.21 조사개시/ ’14.6.26 예비판정/ ‘14.10.23 공청회

○ ‘15.8.19. 기재부, 11.66~22.77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

○ ‘16.3.15. 일본 정부, WTO 제소

○ ‘16.4.28. 양자협의 진행

○ ‘16.6.9. 일측, WTO 패널 설치 요청

○ ’16.7.4. 패널 설치

○ ‘16.8.29. 패널 구성

○ ‘17.3.1~2. 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‘17.5.30~31. 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‘18.4.12.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○ ‘18.5.28. 일측,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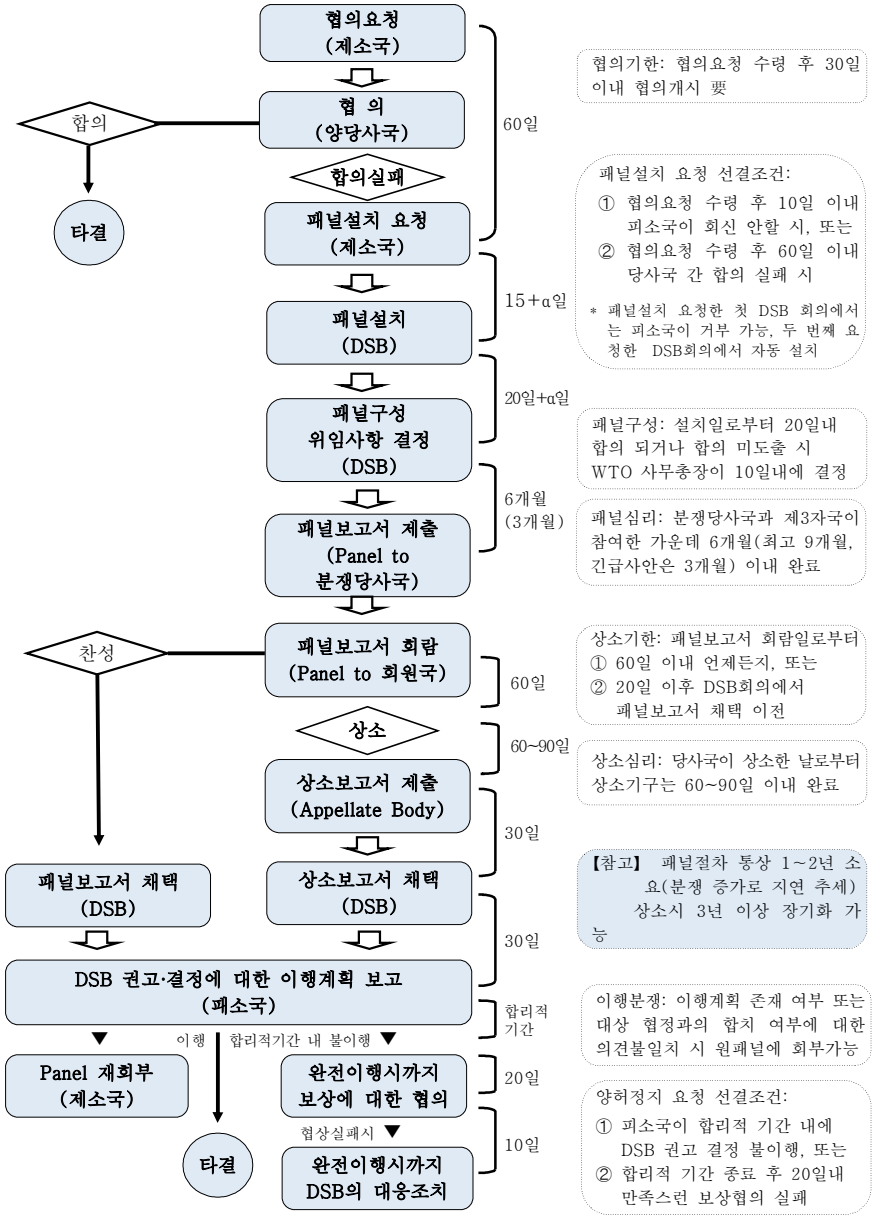
○ ‘19.4.4~5. 상소심 구두심리 회의 개최

○ ‘19.9.10. 상소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참고 2 상소 판정 요지

쟁점		순번	쟁점, 패널, 상소 판정	패널	상소
실체적 쟁점	**가격효과** (3.1, 3.2조)	1	**(쟁점)** 덤핑수입의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혹은 인상억제 등 영향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가격비교방법 부적절, 고가판매와 가격인하간의 합리적 설명 부족**	**승소**	**부분 번복**
	물량효과 (3.1, 3.2조)	2	**(쟁점)** 덤핑수입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증가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국내산업 범위 (3.1, 4.1조)	3	**(쟁점)** 국내산업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했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국내산업 피해 (3.1, 3.4조)	4	**(쟁점)** 피해분석이 객관, 타당했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상소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	5	**(쟁점)** 자금조달 능력, 덤핑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 **(패널)** 적절히 고려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**승소**	**유지**
	인과관계 (3.1, 3.5조)	6	**(쟁점)** 덤핑 이외에 산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 검토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	**승소**	**不상소**
		7	**(쟁점)** 인과관계 분석時 가격효과 등 별도심사 가능 여부 **(패널)** 별도심사가 가능하며, 이에 근거한 가격비교방법상 흠결로 인해 협정 비합치 **(상소) 별도 심사는 부적절하며, 따라서 비합치 판정도 번복**	패소	**번복 (승소)**
		8	**(쟁점)**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 판정이 객관, 타당한지 여부 **(패널)** 상기 인과관계 판정이 협정위반이라는 근거 없음.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**승소**	**유지**
		9	**(쟁점)**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걸러냈는지 여부 **(패널)** 덤핑 이외 요인에 기인한 피해를 걸러내지 못했음을 일본이 입증 못함.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**승소**	**유지**
절차적 쟁점	**비밀정보 처리** (6.5조)	10	**(쟁점)** 비밀정보 분류요청시 ‘정당한 사유’의 명확한 제시 여부 **(패널)** ‘정당한 사유’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, 비밀정보로 처리한 것은 협정위반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패소	유지
	공개요약본 정보수준 (6.5.1조)	11	**(쟁점)** 기업의 자료제출 시, 그 자체로도 이해가능한 공개요약본 제출의무 이행 여부 **(패널)** 공개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아 협정위반 **(상소) 패널 판정 유지**	패소	유지
	핵심적사실 통보 (6.9조)	12	**(쟁점)** 판정의 근거가 된 핵심적인 사실을 최종 판정(무역위 최종의결시) 이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 **(패널) 심사 완료 불가**	**승소**	**유지**
	최종판정에 대한 공고 (12.2, 12.2.2조)	13	**(쟁점)** 최종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 **(패널)** 패널설치 요청서가 미비하여 심리하지 않음**(각하)**	**승소**	**不상소**

붙임 3 **WTO 분쟁절차도**



협의기한: 협의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 협의개시 要

패널설치 요청 선결조건:
① 협의요청 수령 후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 안할 시, 또는
②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

* 패널설치 요청한 첫 DSB 회의에서는 피소국이 거부 가능, 두 번째 요청한 DSB회의에서 자동 설치

패널구성: 설치일로부터 20일내 합의 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내에 결정

패널심리: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(최고 9개월, 긴급사안은 3개월) 이내 완료

상소기한: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
① 60일 이내 언제든지, 또는
② 20일 이후 DSB회의에서 패널보고서 채택 이전

상소심리: 당사국이 상소한 날로부터 상소기구는 60~90일 이내 완료

【참고】 패널절차 통상 1~2년 소요(분쟁 증가로 지연 추세)
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

이행분쟁: 이행계획 존재 여부 또는 대상 협정과의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불일치 시 원패널에 회부가능

양허정지 요청 선결조건:
①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DSB 권고 결정 불이행, 또는
②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내 만족스런 보상협의 실패